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관한 법령 및 규정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1.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 없음	
2.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써미스터 ④ 자동압력 스위치 ⑤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⑥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⑦ 에너지 레귤레이터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3.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 없음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대상 없음	
5. 전기용품 보호용부품	대상 없음	
6. 절연변압기	가. 고주파웰더	① 고주파웰더
	나. 전기용접기	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
	비고) 정격용량 5kVA 이하의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2008.12.26 법률 제09245호]

제2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11조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8>

제19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 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율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벌칙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 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제11조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5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또는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 확인시험을 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8.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7.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770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